

농촌여성 노동의 화폐적 가치평가를 위한 일 연구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the Money Value
of Korean Rural Women's Labor

동국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과정 김인숙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가정학과
교수 최은숙

Dongkuk Univ.
Ph. D. Course: Kim, In Sook
Seoul Natl. Univ.
Professor: Choi, Eun Sook

〈目 次〉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farm housewife's labor has not been properly evaluated, although it has traditionally shared and devoted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farm household econom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money value of rural women's labor. The data were got from the result of time analysis of farm housewives in 1988.

Among the four estimation methods used in this study, the mixed approach of housekeeper replacement cost with individual function cost showed the greatest value in the decision criteria of different farming region, farming size, housewife's age, family size and children number.

The opportunity cost approach showed the lowest value, however, is considered as the most appropriate estimation approach in rural situation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appropriate estimation approach should be established to estimate the money value of rural housewife's labor and their economic position.

I. 서 론

1. 연구의 동기

인간생활의 기본단위는 가정이며, 가정에서는 여러가지 가족자원을 활용하면서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그와 더불어 생명의 재생산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가족자원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간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는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공평한 자원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그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같은 시간동안 일하고 받게되는 보수는 사람마다 달라지게 된다. 특히 정신적인 관리까지를 포함한 가사전반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시간투자를 하고있는 주부의 생활시간은 중요한 가족자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부의 생활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사노동이 댓가가 지불되지 않는 무보수노동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평가가 경시되어 왔다. 그에 따라 주부의 생활시간 역시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더 나아가서는 주부라는 존재마저 별로 가치있게 생각되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그러던 것이 점차 사회가 변화발전 됨에 따라 여성의 지위도 향상되고, 여성자신이 그동안 소홀했던 자신의 노동가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에 따라 여성인 주부가 수행하고 있는 가사노동과 시간사용의 면에도 여러각도에서 관심이 기울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최근들어 주부가 행하는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주부노동의 가치평가를 시도하는 연구가 점차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가사노동만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도시주부의 경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옛부터 우리나라 농가주부는 가부장제 하에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농가경제 향상에 숨은 공로자로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이 기여한 몫에 대해서는 거의 비중이 두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이제까지는 실제적으로 수입이 생긴다든지 경제적인 득이 생기면 그것은 남편이나 시부모의 관리 하에 속하게

되었으며, 혹 그 수입에 관한 관리를 주부가 맡아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노력의 댓가를 정당하게 인정받았다고 보다는 가사노동만을 수행하면서 남편의 생산활동 결과 벌어들인 소득을 관리하는 대개의 도시주부의 입장과 마찬가지로의 결과로 해석되어질 뿐 그들이 수행한 수입노동에 대해서도 단지 '수고' 이상의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김주숙(1984)은 그의 연구에서 오늘날의 농촌여성은 '농가의 부녀자' 혹은 '주부'일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여성농민'이며, 더 나아가서는 반독립적인 '농촌지역사회의 시민'이라는 지위를 갖는다고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갈수록 부녀화, 노령화 되어가는 요즘의 농촌여건 하에서 도시의 취업여성과도, 그리고 도시주부의 경우와도 다른 입장에 처해있는 농가의 주부는 가족노동력으로 운영되는 농업의 주된 노동력 공급자이면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부여된 전통적인 역할까지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하겠으며, 이것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들이 감당하기에 상당히 벅찬 부담일 것이다.

이렇듯 도시주부와는 다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그들이 수행했던 수입노동부분에서조차 정당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농가주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의 연구에서도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이들의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연구의 목적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같은 점을 인식하고 농가경제 속에서의 농가주부의 기여정도를 화폐가치로 밝혀 맞벌이 주부로서의 농가주부의 당당한 위상정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농가주부의 생활시간 중 그들의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에의 종사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농가주부 노동의 가치평가를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노동의 질이라든지 수준의 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농가주부들이 수행한 노동에의 소요시간으로만 노동의 가치평가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시간은 화폐적 가치산정의 근거가 된다는 견해(Matsushima 1981)에 기초를 두고 지금까지는 농가경제에서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추측되고 있는 농가주부 노동의 기여도를 실제적인 화폐가치로 밝혀보기 위한 시험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II. 이론적 배경

농가주부 노동의 화폐적 가치평가에 대하여 논하기 위해서 『농가주부』라는 위치와 그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American Heritage Dictionary에 보면 ‘주부’라는 직업에 대해 “생계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원천을 공급해 주는 활동”이라고 되어있다(Bergmann 1981). 이렇게 본다면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을 모두 수행하는 농가주부는 ‘주부’와 ‘농업인’이라는 두가지 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다.

1. 가사노동과 농업노동

Lindsay와 Knox(1984)는 『전통적인 성역할의 차이 때문에 남성은 소득창출과 같은 외부적인 노동을 선호하고, 여성은 일의 자율성과 같은 목시적인 노동을 선호하지만, 목시적 보수를 선호하는 여성이 실제로는 남성보다 더 낮은 외부적 보수와 목시적 보수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뜻밖이다』고 하였다. 이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여성은 두드러진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미 여성만의 영역으로 알려져 온 가사노동의 결과 얻게되는 만족감이나 사명감을 그들에게 주어지는 목시적 보수로 알고 그것을 선호하지만, 남성에 비해서 그 결과는 오히려 가치없고 의미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은 가부장제 하에서의 여성은 외부적 보수 보다는 목시적 보수를 주로 준다고 보여지는 가사노동의 수행이나 주부라는 위치에 별다른 느낌없이 순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가사노동의 개념에 대해서 문숙재(1982)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로는 개개인의 개인적 소비

를 위한 준비를 의미하고, 좀더 넓은 의미에서는 가족의 부양, 양육, 교육 등이 포함되며, 그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잡으면 댓가가 지불되지 않는 노동으로써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노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 댓가가 지불되지 않는 노동=가사노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 댓가가 지불되지 않는 노동=여자의 일”이라는 등식을 세울 수 있다고 하였다.

또 Walker(1976)는 ‘가사활동시간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이 가족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을 위해 개별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행위를 가사노동 이라고 말하며, 가족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복지를 제공해 주는 가계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伊藤セツ 등(1976)은 가사노동은 노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개별적인 가정생활의 장에서 가족원의 넓은 생명활동도 포함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행위이며, 가사, 육아, 가정관리를 위한 노동이고, 사회적 노동과정에서의 노동에 대한 사적노동이며, 개인적 소비과정에서의 노동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짓고 있다.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Reid(이기영 1982에서 재인용)는 가사노동을 가정생산이라고 표현하면서, 가정생산활동은 가족원에 의해, 가족원을 위해서 수행되는 무보수활동이고, 이는 소득, 시장조건 및 개인의 취향 등의 다른 사정이 허용한다면 시장을 통해 구입한 재화나 가족원이 아닌 타인에 의해 수행되는 유급의 용역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Beutler와 Owen(1980)은 가정생산활동 모델을 통하여 생산활동을 크게 시장생산(Market Production)과 가정생산(Household Production)으로 나누고 시장생산은 교환가치를 생산하는 것이고 가정생산은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가정생산을 다시 대체가능한 것(Separable)과 대체불가능한 것(Unseparable)으로 분류하여 이 중 대체가능한 것이 Reid의 정의에 일치되는 개념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Gronau와 Hawrylyshy 도 가사노동이 제 3자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이정우 외 1987)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가사노동은 가족원

각자 및 공동의 욕구를 위해 수행되는 모든 가정생산활동 이면서 무보수 노동으로, 시장대체성의 여부와 가정생산영역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가정외부의 시장조건에 따라 타인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있는 노동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데 (문숙재 1990), 이러한 견해는 '가사노동을 한다는 것은 남편과 자녀에의 종속물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완전히 없어야 한다'는 여성해방론자들의 주장(Valadez 1984)과 반드시 일치시키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진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농가의 경지규모가 영세하다는 농업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가족구성원들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사경영방식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하여 여성노동력 역시 남성노동력과 함께 농사일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있다.

특히 1960년대 산업화 이후 농촌청장년층의 도시로의 유출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농촌에서는 이미 노령화 내지 부녀화 현상이 지적되어 오고 있으므로 농가주부가 농업노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각국에서 여성이 농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는 해도 실제로는 세계의 소득 중 단지 5%만이 여성에게 귀속되는데 불과하다고 한다. 이것은 여성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생산'이 아닌 '소비'로 해석되고, 공(公)이 아닌 사(私)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의 성과는 소득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업과 경제지 1983) 또한 농촌여성이 가장이든 아니든 간에 가족부양에 주된 기여를 하면서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는 많이 있으며, 그들은 최소한 자기시간의 절반을 경제활동에 투입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노동통계에조차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Zubeida Ahmad 1984)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처럼 농가경제활동 중에서 보아도 같은 일을 남성이 하면 생산활동이 되고, 여성이 하는 경우에는 노동의 질면

에서 과소평가 되는 것 뿐 아니라 심하게는 가사노동과 마찬가지로 무시되어 버리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가주부의 노동에 대한 가치가 과거 가부장적인 개념에서 벗어나고 여성의 생산활동을 제대로 인정받아 평가받을 수 있다면 '맞벌이 가정의 증가는 노동력의 성배분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연구결과 (Mattael 1980)와 같이 우리나라 농가의 주부들도 머지않아 농업인이라는 직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맞벌이 농가 속에서 남편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방법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위한 접근법은 학자마다 다소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그 유형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기영(1982)은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독일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방법을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가사노동을 일반적인 일자리 — 개별적인 사회노동 — 와 동일시하여 이 생산노동의 평가를 위한 분석적 방법(Analytisches Verfahren)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가사노동의 제과제를 총체적으로 하나로 보는 총합적 평가방법(Summarisches Verfahren), 그리고 분석적 평가와 총합적 평가방법을 결합하는 방법(Verknüpfung Analytischer Ansätze mit dem Summarischen Verfahren)을 들고있다. 여기서 분석적 방법은 가사노동의 수행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체적, 정신적 노력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상응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노동평가의 기준을 삼는 방법이고, 총합적 평가방법은 가사노동을 총체적으로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이에 상응한 가치를 임금료율표(tarif)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들의 결합방법은 가사노동을 과제영역별로 세분하여 각 개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즉 시장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다. 또한 기회비용원칙에 의한 방법, 가사노동의 일부를 가정부 또는 기계로 대체할 때 드는 비용으로 평가하거나 가사노동이 사회화 되었을 경우에 드는 비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주부의 가사노동의 성과를 수령자의 만족도의 크기

1) 실제로 농촌여성의 농업노동에의 참여정도를 나타내 는 농업노동 투하량이 '67년에 28.1%이던 것이 '88년에는 46.2%까지 증가하였음.

등으로 평가하는 직접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과는 다른 분류법으로 경제학자들은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방법을 기회비용방법(Opportunity Cost Approach)과 시장비용방법(Market Cost Approach)으로 나누고 있다(이정우 외 1987에서 재인용). 기회비용방법은 주부가 다른 직종에 취업하여 가사노동부분을 시장에 맡길 경우에 그 대행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보는 것이다. 시장비용방법은 다시 총합적 대체비용방법(Replacement Cost Approach)과 전문가 대체비용방법(Individual Function Cost Approach)으로 나뉘어지는데, 전자는 한사람이 주부의 모든 가사노동을 대신 한다는 가정하에서 가사노동에 필적한다고 생각되는 직업종사자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가사노동 영역에 속하는 각각의 작업을 분류한 후 작업에 해당하는 시장임금을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김애실(1985)은 총합적 대체비용방법 중 가정부 대체비용 방법과 전문가 대체비용 방법을 혼용한 방법을 시도해 보고 있는데, 이것은 주부의 역할 중 단순노동 측면은 가정부에게, 그의 가정경영적 측면은 관련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으로 하여 이들에게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는 방법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평가 방법으로는 총합적 대체비용방법, 전문가 대체비용방법, 기회비용방법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를 추정해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즉 김애실(1985)은 총합적 대체비용방법을 적용한 가정부 대체임금 계산으로 1일 6,564원, 1개월당 170,669원(1985년 기준)이라는 가치평가를 하였고, 최명숙(1986)은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에서 파출부에게 시간당 746원씩을 적용하여 하루에 6,094원, 1개월당 182,813원 이라고 하였다(문숙재 1990에서 재인용). 전문가 대체비용방법으로는 김애실(1985)은 가정노동을 11가지 작업으로 분류하여 그 작업들과 유사한 9개의 대체직업의 임금을 적용한 결과 1일 10,459원, 1개월당 271,933원('85 불변가격)의 화폐가치를 계산해 내었고, 이 방법과 총합적 대체비용방법 중

의 가정부 대체비용방법을 혼용한 방법을 통해서서는 1일 15,124원, 1개월당 393,322원의 가정노동가치를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최명숙(1986)은 가정노동을 11개 작업으로 분류하여 이를 8명의 전문 직업인에게 맡긴다고 가정한 결과에서 1일 8,393원, 1개월당 251,779원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기회비용방법을 적용해서는 개별주부의 연령 및 학력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을 주부의 총노동시간에 곱한 결과 1일 평균 13,262원, 1개월당 397,864원으로 측정하고 있다(문숙재 1990에서 재인용). 또한 김선희(1990)는 전업주부의 월평균 가사노동가치를 모두 8가지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살펴 보았는데, 이 중에서 기회비용방법은 417,545원, 전문가 대체방법(전문인 대체비용방법)은 345,678원, 그리고 총합적 대체비용방법 중 파출부의 경우는 238,356원, 가정부는 399,358원으로 계산하고 있어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는 생활시간의 조사방법과 질문방법, 그리고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동가 환산에 관한 연구가 남명희(1984)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역시 가사노동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1984년 정부노동단가 중 공사부분에서의 여성 1일(8시간) 근로수당 3,420원을 이용, 시간당 400원씩 적용하여 살펴본 것으로 도시주부의 가사노동 부분에 적용한 방법과는 다른 접근이었다.

이상 살펴본 모든 방법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역시 가사노동시간이 되고 있으므로 시간을 이용하여 농가주부노동의 화폐적 가치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주부가 수행하고 있는 가사노동과 농업노동 모두 비용이 지불된다면 타인에 의해 대체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현재 두가지 노동부분에서 모두 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농가주부 노동의 화폐적 가치를 평가해 보기 위하여 우선 농가주부의 생활시간 중에서 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고, 현재 가사노동부분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부노동가치 평가방법을 농가주부 노동의 경우에 확대적용 시켜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평가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가주부 노동의 화폐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1) 기회비용방법

이는 농가주부가 자가노동력으로서가 아닌 노동시장에서 유급노동에 참여했을 경우인데,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하여 농촌지역에서 품을 팔았을 경우로만 한정하여 농촌여성의 1일 평균노임액을 적용시켜 보는 방법이다.

$$(T+A) \times Wh$$

[T: 가사노동시간 A: 농업노동시간
Wh: 시간당 기준 농촌노임액]

단, 여기서는 농촌사회의 성격상 도시의 1일 8시간 노동과는 다르다고 판단, 1일 1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여²⁾ 환산하도록 하며, 이것에다 시간당 기준 농촌노임액³⁾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 방법은 농공단지 조성이라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주변에 농사일 이외에 적당한 일거리가 없고 또 학력수준이 비교적 낮은⁴⁾ 대부분의 농가주부의 노동을 평가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보여지는데, 거주지 주변에 다른 일거리가 있거나 학

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가주부의 경우에는 노동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단점이 있다.

(2) 전문가 대체비용 방법

이 방법은 가사노동을 작업성질별로 분류하여 먼저 각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한 다음 각 작업을 해당전문가에게 의뢰했을 때 드는 비용과 역시 농업노동에 소비한 시간을 노동시장에서 구입한 고용인에게 의뢰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으로 계산하여 이들을 합하여 산정해 보는 방법이다.

$$\sum_{i=1}^t (Ti \times Wi) + A \times Wh$$

[Ti: 가사작업 i에 소요된 시간 A: 농업노동시간
Wi: 가사작업 i에 해당되는 임금률⁵⁾
Wh: 시간당 기준 농촌노임액]

그런데 여기서는 농업노동의 경우에 일한시간에 비례하여 품삯을 지불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을 하였으나 실제로 농촌지역에서는 시간당으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며, 가사작업의 경우에서도 주위에서 관련대체직업 종사자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실제로 농가주부에게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3) 가정부 대체비용 방법

일종의 총합적 대체비용 방법으로 주부가 하는 가

5) 전문직업인에 의해 대체가능한 가사노동 영역별 시간당 임금률

가사노동 영역	대체직업	시간당 임금률
의생활 관리	세탁공	1,303원
식생활 관리	가정부	1,676원
주생활 관리	건물관리원 및 청소원	933원
가족시중	학령전교원 및 초등교육원	평균: 2,734원
가정관리	총괄관리자	3,090원
구매	경리원 및 출납원	1,383원

(자료: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1989, 노동부에서 발췌하여 조정한 것임)

- 본 연구자가 경험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실제로 품을 파는 경우, 농번기에는 아침 7~8시부터 작업이 시작되어서 오후 6~7시경에 하루일이 끝나는데, 이중 1시간여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보통 하루 10시간 정도의 노동으로 하루분의 품삯을 받게 된다.
1988. 2월 현재(농한기분) 농촌여성의 1일 평균 노임액은 7,998원(현금 5,650원, 현물 2,348원)이고, 5월 현재(농번기분)에는 1일 8,995원(현금 6,633원, 현물 2,362원)이다.
- 실제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의 학력수준도 국졸이 76%나 되고 있음.

사노동을 모두 가정부가 대신하여 주고, 농업노동 역시 노동시장에서 구입한 고용인이 하는 경우이다.

$$T \times W_o + A \times W_h$$

[T: 가사노동시간 A: 농업노동시간

W_o: 가정부의 시간당 임금⁶⁾

W_h: 고용인의 시간당 기준 농촌노임액]

이 방법 역시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방법이라고 보여진다.

(4) 가정부 대체비용과 전문가 대체비용 방법의 혼용방법

역시 가사노동과 농업노동을 제3자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관리 같은 단순한 노동측면의 일은 가정부에게 맡기고, 가정관리와 가족시중 같은 가정경제적 측면의 일은 관련 대체직업 종사자에게 맡기며, 농업노동의 경우도 노동시장에서 구입한 고용인에게 맡기는 경우에서 각 상황에서 드는 비용을 계산해 보는 방법이다.

$$\sum_{i=1}^t (T_{si} \times W_{si}) + \sum_{j=1}^t (T_{cj} \times W_{cj}) + A \times W_h$$

[T_{si}: 단순가사노동 i에 소요된 시간

W_{si}: 단순가사노동 i에 해당하는 시간당 임금률

T_{cj}: 전문가사노동 j에 소요된 시간

W_{cj}: 전문가사노동 j에 해당하는 시간당 임금률

A: 농업노동시간

W_h: 시간당 기준 농촌노임액]

여기서는 또다른 전문노동에 해당하는 농업경영면에 농가주부가 투입한 시간비용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다소 평가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방법 역시 우리나라 농촌의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4가지 평가방법은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을

연구자가 농가주부의 경우에 적용하기 위하여 조정해 본 것으로 농촌이라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평가방법을 농가주부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시험적인 의미에서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조사방법

본 연구에서는 대상가정의 일반적인 상황을 알기 위한 설문지와 생활시간 측정을 위한 조사표로 구성된 조사표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에는 지대별 구분, 주부의 나이, 주부의 학력, 가계소득, 자녀수, 경지면적 등을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활시간의 측정을 위한 조사표는 1분단위로 시간사용 내역을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대상농가의 표집시 사용한 방법으로는 확률표집 방법 중 군집표집과 비확률표집 방법 중 판단표집을 혼용하였다.⁷⁾ 먼저 행정구역 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9개도 중에서 3개도를 선정한 다음, 각 도별로 지대별 특성⁸⁾을 부여하였다. 즉 경기도는 중간지대, 전남은 평야지대, 경북은 산간지대로 하였다. 그리고는 각 도내에서 해당지대로서의 특성을 가장 잘 갖고 있는 군을 6개씩 판단, 선정하고, 그 군내에서 해당지대를 대표하는 2개 마을 씩을 다시 뽑은 다음, 각 마을에서 농가로서의 조건⁹⁾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농가로 대농, 중농, 소농¹⁰⁾ 각 1호씩을 선정하여 조

7) 대상농가의 표집절차 중 도와 마을 선정시에는 확률표집 방법중 군집표집 방법이, 군과 농가 선정시에는 비확률표집 방법 중 판단표집 방법이 이용됨.

8) 지대별 조건

- 평야지대: 지역내의 들이 75% 정도 또는 이상인 지역
- 중간지대: 지역내의 산과 들이 약 50% 정도인 지역
- 산간지대: 지역내의 산이 75% 정도 또는 이상인 지역

9) 농가로서의 조건: 일반벼농사가구로 주부와 남편이 모두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10) 논과 밭의 면적을 합한 구분

- 대농: 6,000평 이상

6) 가정부의 시간당 임금은 1,676원으로 하였음.

사대상농가로 하였으며, 모두 108호 농가의 108명의 주부가 조사대상이 되었다.

조사는 농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한기와 농번기에 각 1회씩 연 2차례 동일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농한기 조사는 '88.2.22~3.5 사이에, 농번기 조사는 '88.5.16~5.31 사이에 각 농가당 2일간씩 실시하였고, 조사기간 중에는 일요일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예: 제사, 혼사, 장기간 타지외출 등)은 피하였다.

조사방법은 농가주부의 기입능력을 고려하여 연구자로부터 사전에 조사요령에 대한 훈련과 사전실습을 거친 조사자가 해당농가에 거주하면서 주부의 생활시간 사용내역을 관찰, 직접 조사표에 기입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은 조사기간 중 대상주부에게 질문하여 작성하였다.

이리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과 빈도를 구하였고, 1분 단위로 기록한 주부의 생활시간은 2일치를 합산하여 그 평균을 구한 뒤, 이중 노동시간 만을 취하여 조사대상자 가정의 배경요인과의 관계를 검증해 보고 앞서 살펴본 평가방법을 각각 적용하여 보았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농가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평균 경지면적은 1.5ha로 '88 전국평균치¹¹⁾인 1.17ha보다 넓었는데, 영농규모별로는 대농이 2.3ha, 중농은 1.4ha, 소농은 0.8ha 였다. 농가소득은 평균 6,645천원으로 '88 전국평균치인 8,130 천원보다 더 적었는데, 영농규모별로는 대농이 9,241천원, 중농이 6,820천원, 소농은 3,872천원 이었고, 지대별로도 차이가 심하여 산간지대가 7,318천원, 중간지대 6,754천원, 평야지대는 5,862천원으로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평균 가족수는 5.0명으로 '88 전국평균치인 3.98명보다 더 많았고, 주부

• 중농: 3,000~6,000평 미만

• 소농: 3,000평 미만

11) 이하 '88 전국평균치는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서(농림수산부, 1989)에 의함.

학력은¹²⁾ 75.9%가 8년 이하로, 즉 국졸 또는 중중퇴 수준이었으며, 주부나이는 평균 44.3세, 자녀수는 1.5명 정도 였다.

2. 농가특성별로 본 농가주부의 노동시간 구조

다음의 <표 1>은 농가특성별로 농가주부의 노동시간 구조를 살펴본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농가주부의 노동시간은 농번기에 농한기의 거의 1.6배 였는데, 그중 농업노동은 4.8배 였고, 가사노동은 농한기에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농규모별로는 농번기에는 대농, 중농, 소농의 순으로, 농한기에는 중농, 소농, 대농의 순으로 노동시간이 길었고, 그중 농번기와 농한기에 모두 농업노동시간은 소농이, 가사노동시간은 중농에서 가장 길게 나타나 있었다. 지대별로 보면 평야지대는 농번기에 총노동시간과 농업노동시간이, 농한기에는 역시 농업노동시간이 가장 길어서 평야지대 주부가 연중 농업노동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농번기에 가사노동시간은 중간지대, 평야지대, 산간지대의 순으로 길었다. 농한기에 총노동시간은 산간, 평야, 중간지대의 순으로 길었고, 가사노동시간은 산간, 중간, 평야지대의 순으로 길었다.

그리고 주부나이별로 보면 농번기에는 30세 미만 집단과 60세 이상집단에서 총노동 시간이 비교적 짧게 나타났는데, 농업노동시간은 농번기와 농한기에 모두 전자가 가장 짧아서 젊은주부는 농업노동 대신 가사노동에 주로 참여하고 주로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연령층은 대개 40~59세 사이의 주부 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족수별로는 가족수가 많아질수록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는데, 특히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농번기와 농한기에 모두 그런 양상이었고, 자녀수별로도 자녀가 많을수록 노동시간은 길어지는 반면 가사노동시간의 양상이 달랐는데, 이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일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다시 농가주부가 처한 배경요인과 농가주

12) 주부학력은 8년 이하: 82호(75.9%), 9~11년 이하: 22호(20.4%), 12~13년 이하: 4호(3.7%)였다.

〈표 1〉 농가특성별로 본 농가주부의 노동시간 구조

(단위 : 시간)

구 분		노동시간	농업노동	가사노동	의생활관리	식생활관리	주생활관리	가족시중	가장관리	구매	
전체 주부 (N=108)	농번기	12.74	7.87	4.87	0.67	2.77	0.68	0.48	0.02	0.25	
	농한기	7.58	1.65	5.93	0.95	2.75	1.03	0.77	0.15	0.28	
영 농 규 모 별	대농 N=36	농번기	13.20	8.13	5.07	0.60	2.80	0.73	0.67	0.05	0.22
		농한기	7.44	1.54	5.90	0.87	2.73	1.05	0.80	0.35	0.10
	중농 N=36	농번기	12.67	7.20	5.47	0.78	3.02	0.68	0.57	-	0.42
		농한기	7.77	1.42	6.35	0.93	3.10	0.95	0.83	0.05	0.49
소농 N=36	농번기	12.40	8.32	4.08	0.61	2.47	0.65	0.22	-	0.13	
	농한기	7.55	2.00	5.55	1.05	2.40	1.11	0.67	0.07	0.25	
지 대 별	중간 N=36	농번기	12.25	6.65	5.60	0.68	3.31	0.87	0.60	0.02	0.12
		농한기	6.90	0.60	6.30	1.07	3.03	1.53	0.35	0.05	0.27
	평야 N=36	농번기	13.32	8.72	4.60	0.63	2.51	0.62	0.47	0.04	0.33
		농한기	7.87	2.67	5.20	0.62	2.41	0.77	1.27	0.08	0.05
산간 N=36	농번기	12.70	8.30	4.40	0.67	2.44	0.58	0.38	0.02	0.31	
	농한기	8.00	1.68	6.32	1.17	2.80	0.82	0.68	0.35	0.50	
주 부 나 이 별	(1) N=5	농번기	11.62	3.70	7.92	1.23	2.55	1.43	2.52	0.15	0.04
		농한기	8.72	0.22	8.50	1.67	2.33	0.84	3.25	0.00	0.41
	(2) N=33	농번기	12.49	7.27	5.22	0.72	2.99	0.64	0.62	0.01	0.24
		농한기	7.62	1.57	6.05	1.25	2.70	0.83	0.93	0.03	0.31
	(3) N=32	농번기	13.23	9.30	3.93	0.51	2.41	0.57	0.21	0.00	0.23
		농한기	7.21	1.66	5.55	0.68	2.94	1.09	0.62	0.00	0.22
	(4) N=32	농번기	12.91	8.09	4.82	0.72	2.70	0.69	0.29	0.01	0.41
		농한기	8.03	2.09	5.94	0.80	2.75	1.21	0.48	0.01	0.69
	(5) N=6	농번기	11.71	6.12	5.59	0.47	3.67	0.90	0.52	0.00	0.03
		농한기	5.43	0.92	4.51	0.90	2.27	1.17	0.00	0.00	0.17
가 족 수 별	(1) N=20	농번기	12.70	8.50	4.20	0.51	2.53	0.68	0.16	0.00	0.32
		농한기	6.84	1.32	5.52	0.95	2.49	1.18	0.32	0.00	0.58
	(2) N=48	농번기	12.39	7.53	4.85	0.77	2.75	0.73	0.44	0.00	0.16
		농한기	7.64	1.67	5.97	0.99	2.57	1.04	0.91	0.01	0.45
	(3) N=35	농번기	13.11	8.06	5.05	0.58	2.92	0.55	0.64	0.03	0.33
		농한기	7.66	1.74	6.03	0.92	3.07	0.98	0.76	0.02	0.28
	(4) N=5	농번기	13.81	7.54	6.27	0.91	2.51	1.30	1.12	0.00	0.43
		농한기	8.47	2.22	6.25	0.99	3.28	0.82	1.16	0.00	0.00
자 녀 수 별	(1) N=9	농번기	12.03	7.19	4.84	0.42	2.99	0.87	0.33	0.01	0.22
		농한기	5.72	1.37	4.36	0.65	2.21	1.12	0.26	0.00	0.12
	(2) N=15	농번기	12.31	7.98	4.33	0.60	2.39	0.76	0.18	0.00	0.40
		농한기	7.38	1.25	6.13	0.96	2.63	1.16	0.34	0.00	1.04
	(3) N=34	농번기	12.73	7.78	4.95	0.78	2.69	0.73	0.59	0.03	0.13
		농한기	7.94	1.80	6.14	0.98	2.70	1.04	0.94	0.02	0.50
	(4) N=25	농번기	12.57	7.45	5.12	0.71	3.05	0.61	0.46	0.01	0.28
		농한기	7.54	1.47	6.07	1.07	2.78	1.00	1.08	0.00	0.14
	(5) N=25	농번기	13.47	8.65	4.82	0.59	2.69	0.59	0.61	0.00	0.34
		농한기	7.84	1.98	5.86	0.94	3.03	0.98	0.65	0.02	0.24

* 주부나이별: (1) 30세 미만 (2) 30~39세 (3) 40~49세 (4) 50~59세 (5) 60세 이상

가 족 수 별 : (1) 3명 이하 (2) 4 ~ 5명 (3) 6 ~ 7명 (4) 8명 이상

자 녀 수 별 : (1) 없 음 (2) 1명 (3) 2명 (4) 3명 (5) 4명 이상

부의 노동시간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농가주부의 노동시간과 영농규모, 지대, 주부나이, 가족수, 자녀수 등을 SPSS/PC +를 이용하여 F-test해 본 결과 <표 2>, 농번기에는 주부의 나이와 농업노동시간이 1% 수준에서, 농한기에는 가사노동시간만이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지대요인과는 농한기의 총노동시간을 제외하고 모두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외의 배경요인인 가족수와 자녀수는 전혀 유의차가 없어서 이들은 농가주부의 노동시간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표 2〉 농가주부의 노동시간과 대상가정의 배경요인과의 관계

구 분	농 번 기			농 한 기		
	총노동 시 간	가사 노동	농업 노동	총노동 시 간	가사 노동	농업 노동
영농규모	N.S.	*	N.S.	N.S.	N.S.	N.S.
지 대	*	*	**	N.S.	**	***
주부나이	N.S.	***	***	N.S.	**	N.S.
가 족 수	N.S.	N.S.	N.S.	N.S.	N.S.	N.S.
자 녀 수	N.S.	N.S.	N.S.	N.S.	N.S.	N.S.

* P<0.1 ** p<0.05 *** p<0.01

3. 농가특성별로 본 주부노동의 화폐적 가치

이상과 같은 노동시간의 구조에 따라 농가주부 노동의 화폐적 가치를 산정해 보기 위하여 앞서 살펴본 A. 기회비용 방법 B. 전문가 대체비용 방법 C. 가정부 대체비용방법 D. 가정부 대체비용 방법과 전문가 대체비용방법의 혼용방법(이하 A, B, C, D로 표시함)을 영농규모별, 지대별, 주부나이별, 가족수별, 그리고 자녀수별 농가주부노동시간의 평균치에 각각 적용하여 농가주부노동의 화폐적 가치를 구해본 것이 다음의 <표 3>이다.

여기에서 보면 농가주부의 노동의 연간 화폐적 가치는 A<B<C<D로 나타났는데, 가장 가치가 적은 것으로 평가된 A방법으로 보더라도 대상농가 평균소득인 6,645천원의 48%에 해당하는 3,153천원 이었고, 이들의 합을 실질적인 총농가소득으로 가정해 본다면¹³⁾ 약 32%에 달하는 소득부분이 주부노동의 결

과 생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정도는 B, C, D방법에서 더욱 커져서 주부노동의 가치가 현재 평균소득의 약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 시기별로는 A 방법은 농번기에 농한기의 1.89배, B와 C방법은 1.35배, 그리고 D 방법은 1.29배로 농한기보다는 농번기에 주부노동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 볼 수 있는데, 만약 주부가 농사 이외의 타직업에 종사하면서 현재 농번기에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만큼 노동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그들의 학력수준에 맞으면서 농촌지역에서의 평균노임 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 즉 인근의 공장이나 가정부로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들 노동의 가치는 훨씬 높게 평가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영농규모별로는 대농의 B방법을 제외하고는 역시 A<B<C<D로 나타났는데, A방법에 의하면 각 규모에서 대상농가의 평균소득인 6,645천원의 약 46~49%에 해당하는 주부노동가치를 보였고, B 방법에서는 약 65~74% 수준, C방법에서는 약 68~75% 수준, 그리고 D 방법에서는 71~79%에 달하는 주부노동의 화폐적 가치를 보였는데, C 방법에서만 중농의 주부의 노동가치가 가장 컸을 뿐 나머지 세방법에 의한 평가는 대농의 주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대별로 보면 역시 A<B<C<D로 나타났는데, A 방법에 의해서는 대상농가의 평균소득인 6,645천원의 약 45~50%에 해당하는 주부노동가치를 보였고, B 방법에서는 약 61~68% 수준, C방법에서는 약 72~73% 수준, 그리고 D 방법에서는 74~77% 수준에 달하였는데, 역시 C 방법을 제외하고는 평야지대의 주부가 가장 큰 가치를 보이며 다음이 산간지대, 중간지대 주부의 순이었고, C 방법에서만 산간지대 주부가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물론 주부의 농업노동 부분은 부분적으로는 남편의 노동의 결과에 포함되어 이미 농가소득 부분에 계상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정도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주부가 타직업에 종사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수행했던 몫은 남편의 노동부담에 가중되는 것으로 가정해 보기로 하였다.

〈표 3〉 농가특성별로 본 농가주부 노동의 화폐적 가치(1)

(단위 : 원)

구분	전체주부 (N=108)		영농규모별			지대별			
			대농 (N=36)	중농 (N=36)	소농 (N=36)	중간 (N=36)	평야 (N=36)	산간 (N=36)	
A	1월	농번기	11,450	11,870	11,390	11,150	11,010	11,980	11,420
		농한기	6,060	5,950	6,210	6,030	5,510	6,290	6,390
	1달	농번기	343,780	356,200	341,890	334,610	330,560	359,440	342,700
		농한기	181,870	178,510	186,430	181,150	165,550	188,830	191,950
	1년	3,153,980	3,208,300	3,169,990	3,094,610	2,976,740	3,289,630	3,207,960	
B	1월	농번기	14,940	15,750	15,320	13,800	13,920	14,410	13,690
		농한기	11,080	11,320	11,530	10,410	8,790	10,670	11,020
	1달	농번기	448,460	472,770	459,830	414,180	417,630	432,410	410,800
		농한기	332,500	339,820	345,920	312,580	263,860	320,380	330,760
	1년	4,685,820	4,875,580	4,834,580	4,360,620	4,088,990	4,516,800	4,449,400	
C	1월	농번기	15,240	15,810	15,640	14,320	15,360	15,550	14,840
		농한기	11,250	11,120	11,770	10,900	11,030	10,850	11,930
	1달	농번기	457,230	474,300	469,320	429,650	461,010	466,590	445,200
		농한기	337,750	333,600	353,340	327,040	331,160	325,510	358,070
	1년	4,769,910	4,747,460	4,936,030	4,540,190	4,753,070	4,752,700	4,819,720	
D	1월	농번기	15,700	16,520	16,120	14,510	15,990	16,010	15,170
		농한기	12,200	12,430	12,580	11,630	11,400	12,290	13,000
	1달	농번기	471,120	495,760	483,720	435,490	479,850	480,310	455,390
		농한기	366,090	372,960	377,500	349,070	342,010	368,780	390,110
	1년	5,023,280	5,212,340	5,167,380	4,707,460	4,931,230	5,094,560	5,073,040	

주) 1.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함. 2. 농업의 특성상 일정한 휴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휴일이 없이 일하는 것으로 간주, 30일로 보았음. 3. 연간노동의 화폐적 가치는 농번기와 농한기를 각각 6개월로 계산하였고, 각 시기별로 적용기준 임금액은 각각 '88.5월과 2월 현재의 임금으로 하였음.

주부나이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집단에서만 A < C < B < D이고, 다른 집단에서는 역시 A < B < C < D로 나타났다. A방법에 의해서는 대상농가의 평균소득인 6,645천원의 약 40~49% 수준의 주부노동가치를 보인 반면, B 방법은 59~93% 수준, C방법으로는 62~84% 수준이었으며, 가장 높게 나타난 D 방법으로는 64~101%에 해당하는 주부노동가치를 보였다. 특히 30대 미만의 주부의 경우는 D 방법에 의한 노동가치 평가액이 기존의 농가소득보다 더 높으면서 A 방법의 2.1배나 되었고, 방법별로는 A방법에서만 50~59세 집단이 제일 높게 평가된 반면 B, C, D 방법에서는 30세 미만 집단이 가장 높았고, 주부나이별로 본 30세 미만 집단의 경우는 그 어느 집단보다도 주부노동가치 평가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가족수별로는 모든 방법에서 가족수가 많을수록 주부노동가치의 평가액이 높게 나타나 있었고, 8명 이상 집단에서 B와 C 방법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가치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집단에서 A < B < C < D로 나타났다. A방법에 의해서는 대상농가의 평균소득 6,645천원의 45~52% 수준, B방법에서는 63~80% 수준, C방법에서는 67~80% 수준의 주부노동가치를 보였고, D방법에서는 68~86% 수준이었다.

자녀수별로는 대체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부노동가치의 평가액도 높은 경향이었고 역시 A < B < C < D였는데, A방법에 의해서는 대상농가의 평균소득 6,645천원의 41~50% 수준, B방법에서는 47~73% 수준, C방법에서는 62~74% 수준의 주부노동가치를 보였고, D방법에서는 63~78% 수준으로 나타나 있었다.

〈표 3〉 농가특성별로 본 농가주부노동의 화폐적 가치(2)

(단위 : 원)

구분	주부 나이 별					가족 수 별					자녀 수 별				
	30세 미만 (N=5)	30~39세 (N=33)	40~49세 (N=32)	50~59세 (N=32)	60세 이상 (N=6)	3명 이하 (N=20)	4~5명 (N=48)	6~7명 (N=35)	8명 이상 (N=5)	없음 (N=9)	1명 (N=15)	2명 (N=34)	3명 (N=25)	4명 이상 (N=25)	
A. 1	10,450	11,230	11,900	11,610	10,530	11,420	11,140	11,790	12,420	10,820	11,070	11,450	11,300	12,110	
일	6,970	6,090	5,760	6,420	4,340	5,470	6,110	6,200	6,770	4,570	5,900	6,350	6,030	6,270	
1	313,560	337,940	357,010	348,370	315,990	342,700	334,340	353,770	372,660	324,620	332,180	342,510	339,200	363,480	
달	209,220	182,830	172,990	192,670	130,280	164,110	183,310	186,190	203,220	137,240	177,900	190,510	180,910	188,110	
1	3,136,760	3,119,260	3,180,040	3,246,280	2,677,690	3,040,970	3,105,940	3,239,800	3,455,350	2,771,250	3,055,160	3,204,180	3,120,690	3,309,600	
B. 1	17,940	15,140	14,490	14,770	14,570	14,060	14,490	15,710	17,040	14,070	13,710	15,080	14,980	15,740	
일	16,490	11,240	10,150	10,740	7,030	9,240	11,040	11,170	12,490	7,560	10,100	11,450	11,300	10,970	
1	538,410	454,310	434,790	443,240	437,130	421,950	434,720	471,340	511,330	422,240	400,590	452,680	449,490	472,380	
달	494,790	337,440	304,720	322,480	211,190	277,340	331,330	335,300	374,970	227,050	303,260	343,670	339,250	329,150	
1	6,199,310	4,750,530	4,437,090	4,594,360	3,889,960	4,195,760	4,596,360	4,839,940	5,317,860	3,895,810	3,181,870	4,778,170	4,732,490	4,809,270	
C. 1	16,600	15,280	14,950	15,350	14,870	14,680	14,900	15,710	17,290	14,570	14,430	15,290	15,280	15,850	
일	14,420	11,390	10,620	11,620	8,290	10,300	11,340	11,490	12,250	8,400	11,270	11,730	11,340	11,400	
1	498,060	458,640	448,560	460,650	446,210	440,540	447,050	471,410	518,720	437,370	433,050	458,820	458,470	475,760	
달	432,650	341,860	318,880	348,810	248,830	309,210	340,240	344,930	367,510	252,090	338,200	351,900	340,470	342,140	
1	5,584,320	4,803,940	4,604,660	4,856,810	4,170,300	4,498,590	4,723,770	4,898,100	5,317,430	4,136,810	4,627,560	4,864,420	4,793,650	4,907,510	
D. 1	19,460	15,880	15,100	15,550	15,410	14,760	15,320	16,330	18,340	14,870	14,500	15,920	15,700	16,400	
일	17,740	12,330	11,220	13,280	8,240	10,470	12,180	12,240	13,470	8,640	11,320	12,570	12,450	12,050	
1	584,050	476,630	453,200	466,680	462,450	442,810	459,610	490,080	550,490	446,340	435,240	477,680	471,030	492,140	
달	532,200	369,930	336,620	398,620	247,340	314,270	365,590	367,440	404,330	259,290	339,850	377,370	373,510	361,510	
1	6,697,600	5,079,390	4,739,000	5,191,870	4,258,780	4,542,540	4,951,240	5,145,200	5,728,960	4,233,790	4,650,650	5,130,370	5,067,320	5,121,96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가경제에의 기여도가 큰 것으로만 추측되고 있는 농가주부노동의 가치가 어느정도의 화폐적 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농가주부의 생활시간중의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평가방법을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모두 수행하는 농가주부의 경우에 확대적용시켜 본 것이다. 이제까지의 이 분야의 대부분의 연구는 그 대상이 도시주부로 국한되어 있고, 농가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도시주부에게 적용했던 방법을 농가주부의 경우에 조정,적용한 점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산업사회의 발달로 갈수록 부녀화,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서 볼 때 농가주부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른 농가주부노동의 연간 화폐적 가치는 A<B<C<D 방법의 순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A 방법의 경우는 대상농가의 평균소득액인 6,645천원의 약 48%이고, 가장 큰 가치를 보인 D 방법의 경우는 75% 정도였다.

2. 영농규모별로 본 농가주부노동의 가치는 대체로 대농, 소농, 중농 주부의 순이었고, 지대별로는 대개 평야지대, 산간지대, 중간지대 주부의 순이었다.

3. 주부나이별로는 30대 미만의 주부가 다른 집단보다도 큰 가치를 보였는데, 특히 D 방법의 적용결과에서는 평균 농가소득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4. 가족수별로는 모든 방법에서 가족수가 많은 가정의 주부의 노동가치가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수별로는 대체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부노동 가치의 평가액도 높은 편이었다.

이상과 같이 4가지 평가방법을 적용해서 농가주부노동의 화폐적가치를 농가특성별로 살펴 보았는데,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4가지 평가방법 중 농가주부노동의 가치 평가액이 가장 낮게 나타난 기회비용방법이 현재의 농가주부의 학력수준이나 주변여건을 감안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로 인한 가치평가액도 대체로 현재소득의 약 4, 50%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주부의 노동가치가 얼마나 커다란 비중을 갖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학력수준이 비교적 높거나 좀더 조건이 좋은 직업에의 종사능력이 있는 농가주부의 경우에는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단점이 있고, 다양한 대체직업이 적용된 방법에서는 30세 미만주부의 노동가치가 더 높게 나타난 점에서 보더라도 그들의 존재를 정당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 농촌생활에서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해준다.

더욱이 요즘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역할이 다양화 되어가면서 점차 여성자신의 능력을 경제활동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추세이고, 젊은 여성들이 농촌에의 정착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농업노동 부담이며, 무작정 잘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여 모은 재산은 모두 남편의 몫으로, 또 한해의 노력의 결실은 모두 시부모가 관리하게 되는 것에서 어느날 자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어느 농가주부의 푸념에서 보더라도 이제는 가부장제라는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점차 농가주부의 농가경제에 대한 기여정도를 화폐적 가치평가를 통해서 정당하게 인정을 해주고 그들의 지위를 개선해 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그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의 본연구는 주부의 가사노동 부분의 가치평가 방법을 이용해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농가주부의 실정에 맞는 노동의 화폐적 가치 평가방법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가주부를 대상으로 한 자원관리의 연구가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농가주부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여성으로서의 농가주부의 위치를 바람직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김선희(1990),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관

- 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2), p. 73~90.
- 2) 김애실(1985),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서울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3(4), 한국여성개발원, p. 23~48.
 - 3) 김주숙(1984), “한국의 농촌발전을 위한 논고”, 여성연구 2(3), 한국여성개발원, p. 43~73.
 - 4) 남명희(1984), “가사노동시간의 노동가 환산에 관한 연구 — 부녀새마을지도자 및 일반주부”, 안동대 새마을 연구 제2집, p. 1~18.
 - 5) 농업과 경제지(1983), “국제적으로 본 농업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 국제식량농업학회지, p. 34~39.
 - 6) 이기영(1982), “가사노동의 경제적 의의와 평가에 관한 소고” 고려대 사대논집 제7집, 고려대학교, p. 125~145.
 - 7) 이정우·최보가·최명숙(1987), “한국주부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추정”, 대한가정학회지 25(4), p. 99~112.
 - 8) 문숙재(1982), “가사노동의 가치와 평가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0(4), p. 177~184.
 - 9) ——(1990), “가정생산”, 신광출판사.
 - 10) 伊藤セツ 외 7人(1978), “家事勞動の現状と動向(第1報)”, 日本家庭學雜誌 29(8), p. 539~545.
 - 11) Babara R. Bergmann(1981). “The Economic Risks of being a Housewif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1(2), p. 81~86.
 - 12) Chiyono Matsushima(1981), “Time-input and Household Work-output Studies in Japan-present state and future perspect”, J.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5(3), p. 199~218.
 - 13) F.H. Buttel & G.W. Gillespie Jr.(1984), “Sexual Division of Farm Household Labor”, Rural Sociology 49(2), p. 183~209.
 - 14) I.E. Beutler & A.J. Owen (1980), “A Home Production Activity Model”,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90(1), p. 16~26.
 - 15) Joseph J. Valadez & Remi Clignet(1984), “Household as an ordeal:culture of standards versus standardization of culture”, American J. of Sociology 89(4), p. 812~834.
 - 16) Julie A. Matthaei(1980), “Consequences of the Rise of the two-earner family:the breakdown of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American Economics Review 70(2), p. 198~202.
 - 17) Kathryn Walker(1969), “Homemaking Still takes Time”, J. of Home Economics 61(8), p. 621~624.
 - 18) K.E. Walker amd M.E. Woods(1976), “Time Use: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19) Paul Lindsay & William E. Knox(1984), “Continuing and Changing in Work Values among Young Adults:a Longitudinal Study”, The American J. of Sociology 89(4), p. 918~931.
 - 20) Zubeida Ahmad(1984), “Rural Women and their Work:Dependance and Alternative for Change”, International Labor Review 123(1) — 번역분; 장정순 역(1984), “농촌여성과 노동”, 여성연구 2(3), 한국여성개발원, p. 132~146.